대구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

(황순자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 6160 발의년월일 : 2021. 10. 27. 발 의 자 : 황순자 의원

> 김동식 의원 김태원 의원 박갑상 의원 박우근 의원 배지숙 의원 이만규 의원 이명애 의원 이영애 의원

유영애 의원

1. 제안 이유

가.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근 거규정을 마련하여, 점점 심화되고 있는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 환경을 보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- 가.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할 것을 규정함(안 제4조)
- 나.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개최하는 행사 및 회의 등에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함(안 제6조)
- 다.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는 데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대해 규정함(안 제7조)

3. 참고 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예산조치 : 관계부서와 협의 필요

대구광역시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내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 을 절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교육행정기관"이란「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에 따른 본청, 직속기관, 교육지원청을 말한다.
- 2. "학교"란「유아교육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「초·중등교육 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
- 3. "1회용품"이란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 이라 한다)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.
- 제3조(책무 등) ① 대구광역시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학교의 장은 1회용품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 오염과 자원 낭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·교직원 등의 이해와 관 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4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교육감은 대구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

- 2.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
- 3. 환경 보전 및 자원 절약에 관한 교육
- 4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5조(실태조사)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교육행정 기관과 학교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제6조(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) ①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서 행사 및 회의 등을 개최할 경우,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재난상황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.
 -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1회용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경우, 법제2조 제16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7조(교육·홍보) 교육감은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 낭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생·교직원 등에게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는 데 필요한 교육·홍보등을 할 수 있다.
- 제8조(협력체계 구축)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및 관련 기관,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- 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붙임)

관계 법 령

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~ 14. (생략)
- 15. "1회용품"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- 16. "생분해성수지제품"이란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제17조에 따라 환경 표지(環境標識) 인증을 받았거나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맞는 제품으로서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.

17. (생략)

「자원순화기본법」

- 제5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종합적·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분담 및 관할구역의 경제적·자연적·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제7조(국민의 책무) ①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,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며,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 (耐久年限)까지 최대한 사용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.
 - ② 모든 국민은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,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